[별지 제11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스스로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내게 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우리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OO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